

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40조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.

나.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,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,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내용·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

- 1) 사업의 전부정지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의 경우: 처분 기준일수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것. 이 경우 늘릴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- 2) 항공기가 1대인 사업자의 등록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: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를 할 것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사업종류별 처분내용 |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| | 항공기 사용 사업 | 항공기 정비 및 항공기 취급 업 | 항공기 대여 및 초경 량비 행장 치사 용사 업 | 항공 레저 스포 츠사 업 | 상업 서류 송달 업 | 항공 운송 총대 리점 업 | 도심 공항 터미 널업 | 여행 업자 |
| 1. 등록·허가 및 신고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·제42조·제44 | 법 제40조제1항제1호, 제43조제7항, 제45조제7항, 제47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영업 소 폐쇄 | 영업 소 폐쇄 | 영업 소 폐쇄 | |
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조·제46조·제48조·제50조 및 제52조에 따른 등록·신고를 한 경우 | 조제8항, 제49조제8항,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| | | | | | | | | | | |
| 나. 법 제30조·제42조·제44조·제46조·제48조·제50조 및 제52조에 따른 등록·신고를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40조제1항제2호, 제43조제7항, 제45조제7항, 제47조제8항, 제49조제8항,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영업 소 폐쇄 | 영업 소 폐쇄 | 영업 소 폐쇄 | | | | |
| 다. 법 제30조·제42조·제44조·제46조·제48조·제50조 및 제52조에 따른 등록·신고를 한 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| 법 제40조제1항제2호, 제43조제7항, 제45조제7항, 제47조제8항, 제49조제8항,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| 사업 일부 정지 (30 일) | 사업 전부 정지 (30 일) | 사업 전부 정지 (30 일) | 사업 전부 정지 (30 일) | 사업 전부 정지 (30 일) | 사업 전부 정지 (30 일) | 사업 전부 정지 (30 일) | | | | |
| 라. 법 제30조·제42조·제44조·제46조·제50조·제48조 및 제52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| 법 제40조제1항제3호, 제43조제7항, 제45조제7항, 제47조제8항, 제49조제8항,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영업 소 폐쇄 | 영업 소 폐쇄 | 영업 소 폐쇄 | | | | |
| 2.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| 법 제40조제1항제4호, 제43조제7항, 제45조제7항, 제47조제8항, 제49조제8항,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| | | | | | |

| | | | | | | | | | |
|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지 않은 경우 | 49조제8항 및 제51조제7항 | | | | | | | | |
| 10. 「항공안전법」 제 9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 항정지기간에 운항 한 경우 | 법 제40조제1 항제13호 | 등록 취소 | | | | | | | |
| 11.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 반하여 사업정지기 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| 법 제40조제1 항제15호, 제 43조제7항, 제 45조제7항, 제 47조제8항, 제 49조제8항, 제 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등록 취소 | 영업 소 폐쇄 | 영업 소 폐쇄 | 영업 소 폐쇄 | |